

Fi 시드머니 적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소법"이라 한다)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
구 분		내 용				
상품명		• Fi 시드머니 적금				
가입대상		• 개인				
가입기간/가입금액		• 가입플랜별 상이(6개월~60개월)				
납입방법		• 가입기간별로 정해진 월불입금액을 매월 약정일에 정기적으로 납입				
가입플랜		• 선택한 가입플랜에 따라 월불입금액이 정해지며, 계좌개설후 변경불가				
	100만원 만들기	6개월(월170,000원), 12개월(월90,000원)				
	1,000만원 만들기	12개월(월820,000원), 18개월(월550,000원), 24개월(월410,000원)				
	1,500만원 만들기	18개월(월820,000원), 24개월(월610,000원), 36개월(월400,000원)				
	3,000만원 만들기	36개월(월800,000원), 48개월(월590,000원), 60개월(월470,000원)				
	3,500만원 만들기	60개월(월540,000원)				
거래방법		• 신규 : 영업점, 모바일뱅킹(다올디지털뱅크 Fi(파이)) • 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다올디지털뱅크 Fi(파이), SB톡톡+)				
이자지급시기		• 만기일시지급식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
제한 사항	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• 가입플랜별 1인 1계좌				
이자율(연이율) (26.07.15현재)	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• 세율 변동 시 세후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				
		가입플랜	가입기간	기본이율	월불입금액	계약금액(세후)
		100만원	6개월	4.00%	170,000	1,030,080
			12개월	4.00%	90,000	1,099,810
		1,000만원	12개월	4.00%	820,000	10,020,380
			18개월	4.00%	550,000	10,165,230
		24개월	4.00%	410,000	10,186,860	
			1,500만원	18개월	4.00%	820,000
		24개월		4.00%	610,000	15,156,060
		36개월	4.00%	400,000	15,151,250	
			3,000만원	36개월	4.00%	800,000
		48개월		4.00%	590,000	30,276,640
		60개월	4.00%	470,000	30,625,490	
			3,500만원	60개월	4.00%	540,000

구 분	내 용												
만기후이율	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경과기간</th><th>이 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 이내</td><td>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</td></tr> <tr> <td>1개월 초과</td><td>연0.1%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경과기간	이 율	1개월 이내	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	1개월 초과	연0.1%						
경과기간	이 율												
1개월 이내	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												
1개월 초과	연0.1%												
만기이자 계산방법	이자계산식 = 월납입금 × {계약월수 × (계약월수+1)/2 × 이율/12}												
만기앞당김 해지	- 만기 앞당김 이율 : 약정이율+1.5% -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,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 만기앞당김 이자를 만기 지급이자에서 공제 후 지급												
입금지연	- 입금지연이율 : 약정이율+1.5% -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 ① 입금지연이자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365 X 입금지연이율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계약월수												
원천징수	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												
중도해지이율	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예치기간</th><th>이 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미만</td><td>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</td></tr> <tr> <td>1개월이상 ~ 6개월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50%</td></tr> <tr> <td>6개월이상 ~ 9개월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55%</td></tr> <tr> <td>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60%</td></tr> <tr> <td>12개월이상</td><td>기본이율 × 70%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예치기간	이 율	1개월미만	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	1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0%	6개월이상 ~ 9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5%	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	기본이율 × 60%	12개월이상	기본이율 × 70%
예치기간	이 율												
1개월미만	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												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0%												
6개월이상 ~ 9개월미만	기본이율 × 55%												
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	기본이율 × 60%												
12개월이상	기본이율 × 70%												
예금해지시 불이익	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												
위법계약 해지권	- 금융회사가 금소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-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												
자료열람 요구권	-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
유의사항	만기앞당김해지, 입금지연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, 만기해지시 목표금액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

구 분	내 용
세제혜택	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• 가입한도 :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 • 가입대상 :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만기해지 사전신청	• 자동해지 -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 - 만기(이연)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자동해지 처리 - 납입 연체일수가 있는 정기적금의 자동해지는 만기이연일에 처리 - 전화차 불입이 완료된 계좌에 한하여 처리 • 자동재연장 (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) 신청은 불가합니다.
연계·제휴 서비스	■ 해당사항 없음 □ 해당사항 있음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①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**중도해지하는 경우,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,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**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

☐ 예 ☐ 아니오 “중도해지이율”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

② 본인은 다올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**합니다.

년 월 일 예금주: (서명/인) 대리인: (서명/인)